

##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쟁점사항 개선방안\*

박 광 서\*\*

- 
- I. 서 론
  - II.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주요 쟁점사항
  - III. 핵심부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 IV.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 V. 결 론
- 

주제어 : 원산지, 원산지제도, 원산지표시, 핵심부품 원산지,  
세트물품 원산지

### I. 서 론

원산지제도는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생산자 보호,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차등부과 등의 의미가 있으며, 더욱이 각국의 경쟁적인 FTA추진으로 그

---

\* 이 논문은 2012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관련 국내 법령들은 필요에 따라서 제·개정되다 보니 완벽하게 정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원산지표시위반, OEM물품의 원산지판정,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개별법에서 별칙규정의 형평성 등이다. 최근에는 동시다발적인 FTA의 추진으로 인한 발생하게 되는 대외무역법 등 일반법에 의한 원산지제도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FTA의 핵심인 원산지제도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스파게티볼효과, 임블던효과, 나비효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FTA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교역국간 원산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제도의 운영상 비합리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적용되는 대외무역법과 FTA 협정이 존재하여 혼란스럽고, 동일한 품목이라도 수출입에 적용되는 일반원산지제도와 특혜원산지제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문제점은 제외하고 최근에 문제되는 핵심부품(또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산지와 관련된 논문은 최근 들어 매우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핵심부품 및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 또한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원산지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분석과 함께 선행 연구자료 및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관련 공무원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23개 광역단체 원산지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 II.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 주요 쟁점사항

### 1.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개괄

우리나라 원산지제도의 목적은 ① 소비자 및 생산자보호,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외무역법 제33조), ② 재정수입 확보 (관세법 제229조), ③ 관세특혜 (FTA협정) 등이다.

원산지 관련 국내법은 1991년<sup>1)</sup> 대외무역법<sup>2)</sup>이 수입물품 원산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세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sup>3)</sup> 등 일반법과 한·칠레 FTA관세특례법('04.3), FTA관세특례법('05.12) 등 FTA 관련 특별법 및 FTA협정별 관련 원산지 규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별도 장(제3장의2)에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① 원산지표시, ② 원산지판정, ③ 원산지확인·증명, ④ 위반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수출물품 및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및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sup>4)</sup> 대외무역법과 관련된 원산지 고시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및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등을 두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 대상물품과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서 전체 HS4단위기준 1,244개 물품의 52.7%인 656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실수요자 직접 수입물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된다.

원산지표시방법은 일반원칙과 특례표시방법으로 구성된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직접 표시하지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최소포장·용기 등에 표시한다. 원산지표시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다.

1) 1991년 대외무역법에 규정을 두기 전에 우리나라 원산지제도는 관세법시행령에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 원산지결정기준('73)을 두고 있었음  
 2) 제정: 1986.12.31 법률 제3895호, 최종개정: 2010.04.05 법률 제10231호  
 3) 제정: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22호, 시행: 2010년 8월 5일  
 4) 대외무역법개정 : 법률 제10231호, 2010.4.5, [시행 2010.10.6]

〈표 1〉 대외무역법 원산지 표시방법

일반원칙	해당물품에 ① 한글·한문·영문으로, ② 쉽게 판독가능하게,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④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예 외	① 해당물품 최소포장 또는 용기, ② 원산지 오인 우려 표시물품, ③ 단순 가공물품, ④ 수입세트물품, ⑤ 수입용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특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오인우려에 대한 표시이다. 원산지 오인 우려 표시물품이란 OEM방식 수입물품, 상호, 상표, 지역, 국가, 언어명이 수입물품 원산지와 상이한 경우 등을 말한다. 표시방법은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한 전면 또는 가까운 곳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진열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푹말로 표시해야 한다.

둘째,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표시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10]의 수입세트물품은 구급상자, 치과용세트, 앙상블, 테이블보세트, 공구용세트, 매니큐어 세트, 식탁용품세트, 마이크·스피커세트, 음향증폭세트, 제도세트, 완구세트, 개인용여행세트 등 15개 품목이 있다. 표시방법은 원산지가 1개국일 때는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고, 2개국 이상일 때는 개별물품 및 포장·용기에 따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셋째, 수입 후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다. 단순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 물품포장,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선별·구분·절단·세척 또는 혼합작업, 가축의 도축작업 등과 같이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기 곤란한 가공활동을 말한다. 최근의 판유리, 커피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가공의 해석에 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

넷째, 수입용기에 대한 표시이다.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와 별도로 분류되는 수입물품은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한다. 단, 1회 사용 및 실 수요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대형포장 형태로 수입하여 최종구매자 구매 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한다.

## 2.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최근 사례 및 쟁점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판유리와 커피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단순가공의 해석문제이며, 후자의 경우는 복층공정이 단순가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공정이냐의 해석문제이다.

### 가. 판유리사례

판유리사례(2011년)는 단순가공에 대한 대외무역법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국회에서 기술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판유리를 수입하여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하여 건축용으로 쓰인 경우에 단순가공인지 실질적변형인지에 따라 한국산표시 가능 여부가 논점이다. 제조업체는 기술적 측면에서 단순가공으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수입업체는 실질적 변형으로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표 2〉 판유리 가공에 대한 상반된 입장

제조업체	수입(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단순 가공활동임</li> <li>· 원판유리의 품질이 중요</li> <li>· 판유리는 면가공, 복층, 접합, 강화 후 건축용으로 쓰임 (기본처리, 단순가공)</li> <li>· 소비자 보호(알권리) 차원에서 표시 (원산지제도목적, 소비자단체의견)</li> <li>· 내수품목으로 판유리산업 보호</li> <li>· 세번 변경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음</li> <li>· 태풍시 파손된 유리, 샤워부스 및 전자레인지 파손 등 안전문제 언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 유리는 물리적 특성과 부가된 성능 및 기능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남</li> <li>· 가공과정 부가가치 창출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8항 단순가공 범위를 넘어섬</li> <li>· 원판유리 특성과 무관하게 물질적, 실질적으로 특성이 완전히 바뀜</li> <li>· 용도는 건축용, 전자레인지, PDP(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등</li> <li>· 중소기업 지원·상생 차원에서 적극적 해석</li> <li>· 유리시장 독과점(제조업체 담합조사, 2009년, KCC, 한국유리공업) 문제</li> </ul>
∴ 단순가공으로 외국산으로 표기	∴ 실질적 변형으로 국내산으로 표기

5) 관련 조항: 법 제33조 2항, 령 제55조 2항, 규정 제85조 제8항, 규정 제8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나. 커피사례

커피사례(2011년)는 로스팅 과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경부는 로스팅 공정국을, 관세청은 생두 생산국을 원산지로 보아여 한다는 입장이다.<sup>6)</sup> 커피 관련 업체가 원산지 판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위원회에서 원두 생산국을 원산지로 결정하였다.(11.8.30) 관세청의 시정명령에 관련 업체는 시정조치를 하였고, 이후 수입되는 로스팅 커피는 원두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 중이다.

업계는 시정조치에 병과된 과징금(11개 업체, 약 21억원)은 과도하며, 커피의 원산지는 로스팅 수행국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도 커피의 원산지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11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11.10.25)

〈표 3〉 커피 원산지 결정에 대한 상반된 입장

지식경제부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는 로스팅 공정을 통하여 커피의 본질적 특성이 나타남</li> <li>· 생두의 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로스팅 시 복잡한 브랜딩으로 원산지관리에 어려움</li> <li>· 생두는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아 로스팅 공정을 원산지 기준으로 하여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li> <li>· 원산지판정기준을 생두산지에서 볶음공정 수행국으로 다시 판단하였고, 수입업자가 원산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감안시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볶음커피의 경우 원산지를 생두 산지로 판정해 왔음</li> <li>· 원산지확인위원회('11.8월)에서도 생두 산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li> <li>· 일선세관에서는 원산지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예정 통보서를 기 통지한 상태</li> </ul>
<p>∴ 로스팅 공정국이 원산지</p>	<p>∴ 생두 생산국이 원산지</p>

상기 두 사례는 양측 주장이 일면 타당한 의견으로 선 듯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준을 미

6)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지식경제부, 2012. 11. p.176

리 설정해 두고, 행정부에서 권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 원재료의 생산국과 가공국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커피 등 2개국 이상에서 생산·가공·제조되는 가공물품의 경우에 생산국과 가공국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행표시를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원산지와 표시된 원산지 개념에 차이가 발생하여 원두 가공국에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는 생산국과 가공국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이와 함께 가공국을 병행하여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다.<sup>7)</sup>

#### 다. 제품 원산지표시 vs. 원산지증명서

커피사례 및 영국산 브랜딩 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산지판정(일반·FTA),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에 따라 정해지고, FTA원산지에 대한 특혜관세는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에 따라 관세양허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FTA협정에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양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용도가 차이가 있다. 상술하면,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특정 국가의 원산지임을 확인받아야 할 경우, 원산지허위 표시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표시제도는 별개의 사항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거나 원산지표시를 했다고 원산지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가 생략이 가능하여 표시되지 않았다고

7) 황은애·이승진,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커피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2호, 2012. 8, p.214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적용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관련 여러 쟁점 중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핵심부품(원재료)의 원산지표시,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를 다루고자 한다.

### Ⅲ. 핵심부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 1. 필요성 및 현행제도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되면 1개 국가만 원산지로 표시하는 일물일원산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품의 원산지표시는 원산지로 판정된 1개 국가만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원재료의 비율이나 부가가치에서 원산지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

#### 2. 핵심부품(원재료) 원산지표시 관련 다른 제도

##### 가. 식품표시제도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는 식품에 관한 정보로서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의사항 등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이다.<sup>8)</sup>

식품표시 대상은 가공식품, 단순가공식품, 유기농식품 등이며, 근거법령으로 식품위생법(보건복지가족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

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나라([www.foodnara.go.kr](http://www.foodnara.go.kr))

표시기준(식약청) 등이 있다.

제도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와 동일하다. 이 제도에 따라서 생산자는 식품소재나 공정·포장·유통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유익한 점, 타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넓은 상품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질서유지와 건전한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허위·과대 표시를 배제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 권리에 부응하는 적절한 표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욕구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대하고 있는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품에 표시된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를 보고 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입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교역량 증가에 따라 개별 국가의 표시기준을 국제 표시기준과 조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나. 식품영양표시제도

식품영양표시제도는 식품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식품표시제도 중 일부분이다. 근거법령으로 식품위생법 제10조(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sup>9)</sup> 등이 있다. 영양표시제도는 1994년에 영양 강조 표시제품, 특수용도식품,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식사대용식품 등으로 의무 대상 식품 확대하였으며, 2006년에는 의무 영양성분 확대, 1회 제공량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0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외식메뉴에 영양표시제도를 도

9)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95-67호(1996.01.01), 최종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2011.11.07)

입하였다.<sup>10)</sup>

#### 다.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표시는 포장재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 표시란에 추가하여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팻말, 안내 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에 게시된 품목이며, 커피, 주류, 당류, 식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커피의 경우를 절차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커피(커피 가공품 포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과정 없이 그대로 유통할 경우에는 국내 유통 농산물로 정의되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제2호의 대상품목의 적용을 받아 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여 유통해야 한다.<sup>11)</sup>

수입 커피를 국내에서 커피 가공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커피 가공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제3호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입 커피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재수출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산원료는 ‘국산’, ‘국내산’ 또는 시·군명을, 수입 원료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동일 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배합비율이 높은 1순위 또는 2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복합원재료 2가지를 표시한다. 다만, 98%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료 1가지만 표시가 가능하다.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한다. 특정원료에 사용되는 원산지와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

10) 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nara.go.kr)

11) [별표1] 원산지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하거나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다. 단, 물, 식품첨가물, 당류, 식염은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료 함량 순위에 따라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다. 혼합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원료 1가지를 표시한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 국내산 배추 60%, 중국산 김치속 30%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 (표시) 김치(배추: 국내산, 김치속: 중국산)</li> <li>• 튀김가루: 밀가루 미국산 98%, 소금 국내산 2% (표시) 튀김가루 : 밀가루(밀: 미국산)</li> </ul>
----	---

②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한다. 고춧가루는 혼합비율에 따라 표시대상이 아님에도 “고추”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추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장: 찹쌀 50%, 밀가루 30%, 고춧가루 20% 등 혼합하여 제조 (표시) 고추장: 찹쌀(국내산), 밀가루(호주산), 고춧가루(고추: 중국산)</li> </ul>
----	---

③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춧가루 : 마른고추(중국산 50%, 태국산 30%, 멕시코산 20%)를 혼합 (표시) 고춧가루: 마른고추(중국산 50%,태국산 30%)</li> </ul>
----	--

### 3. 핵심부품(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개선방안

#### 가. 원산지 개념의 세분화

원산지 개념이 제조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복합 원산지를 표현하는 개념들로 세분화되고 있다.

〈표 4〉 복합원산지 개념

복합원산지 개념	원산지
디자인 원산지(CoO of Design)	제품을 디자인 한 국가
부품 원산지(CoO of Part or Component)	부품을 조달한 국가
조립 원산지(CoO of Assembly)	제품을 최종 조립한 국가
기업 원산지(CoO of Corporate)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

특히 글로벌화로 기업들이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제조 원산지가 달라지고 있으며, 기술력과 디자인이 우월한 원산지에서 제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원산지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 나. 일물다원산지기준의 적용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통일적인 일물일(一物一)원산지기준을 적용하지만, FTA협정에서는 일물다(一物多)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FTA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투자·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국내 민감 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양국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양국 간 산업구조, 관세율구조, 교역특성 등이 반영되므로, FTA마다 서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대외무역법 원산지 기준도 복수표기 또는 일물다원산지 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 다. 특별공정이나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공정이나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능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극적 측면과 생산자의 특별 공정이나 부품 등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한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소극적으로 생산자가 주요한 공정 및 부품(원재료) 표시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생산자가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도 주요한 공정 및 부품(원재료)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정상 핵심 부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에 추가하여 핵심부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품목별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제품 우수성이나 성질을 알리는데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핵심부품 또는 원재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대상품목 중에서 주요공정기준 대상품목(카메라)으로 하고, 더불어 핵심품목 및 원재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공품으로 하고, 핵심품목 및 원재료 표시 대상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제1항 제7호를 추가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5항을 참조하여 제87조(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제4항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76조 ①	7. 물품의 특별공정이나 핵심부품 및 원재료를 원산지 표시에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7조	④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물품의 특별공정이나 핵심 부품 및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에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IV.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 1. 필요성 및 현행제도

대외무역법에서 지정한 수입세트물품은 구급상자, 치과용세트, 양상블, 테이블보세트, 공구용세트, 매니큐어세트, 식탁용품세트, 마이크·스피커세트, 음향증폭세트, 제도세트, 완구세트, 개인용여행세트 등 15개 품목이다.

대외무역법은 세트물품에 대해서 각각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그 대상 물품을 [별표10]에서 정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별표10] 이외의 세트물품의 경우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트물품의 정의 및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경우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도 개별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한다.

〈표 5〉 수입 세트물품

HS Code	품 목 명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6103.21-6103.29	남자 또는 소년용 양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104.21-6104.29	여자 또는 소녀용 양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
6203.21-6203.29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양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204.21-6204.29	여자 또는 소녀용의 양상블(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6308	HS 6308 중 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8206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8214.20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8215.10- 8215.20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칼·버터용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8518.30.3030	마이크로폰 스피커 복합세트
8518.50	음향증폭세트
9017	HS 9017중 제도세트 (Drawing Set)
9503	HS 9503(완구) 중 세트제품
9605	개인용의 여행세트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10]

## 2. 세트물품 원산지표시 관련 다른 제도

세트<sup>12)</sup>물품이라 함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성질의 2개 이상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이다. 따라서 세트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또는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FTA협정에서는 세트물품도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非원산지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 인정하고 있다.

세트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은 세트물품을 15개 품목으로 한정하지만, FTA협정은 협정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 원칙에 따라 일반법(관세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 중에서 세트물품 규정이 있는 협정은 한-EU, 한-EFTA, 한-미, 한-페루 FTA 등이며,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6〉 FTA협정별 세트물품규정 비교

구분	EFTA / EU	미국		페루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근거규정	부속서I 제9조 (EFTA) 의정서 제9조(EU)	제6.9조	제4.2조 제8항	제3.9조

\* 자료 : 해당 FTA협정

12) 세트(set)는 도구나 기구 따위의 ‘한 벌’을 말한다. 즉, ‘벌’은 두 개 또는 여러 개가 모여 갖추는 덩어리를 세는 단위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세트는 외래어로 정착된 표현으로 그대로 세트물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는 한-EFTA, 한-EU는 비원산지물품이 공장도가격의 15%, 한-페루는 FOB가격 15%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단일기준을 적용하며, 한-미국은 FOB가격으로 일반품목은 15%, 섬유류는 10%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산과 스위스산으로 구성된 공구세트를 스위스에서 수입하려고 할 때, 한-EFTA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세트물품의 전체가격(공장도거래가격기준) 중 독일산 구성품의 가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스위스산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한-EFTA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sup>13)</sup>

세트물품 규정이 없는 FTA는 품목분류기준상 세트로 분류되는 세트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아닌 경우는 각 구성품별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다.

〈표 7〉 FTA협정별 세트 관련 규정

협정	내 용
한/EFTA	〈제9조 세트〉 부록 2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제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한/EU	〈제9조 세트상품〉 HS 통칙 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한/미	〈제6.9조 상품의 세트〉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도록 규정한다.

13) 참고법령: 한-EFTA FTA 부속서 I 제9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아목

협정	내 용
한/미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p> <p>&lt;제4.2조 제8항(섬유 또는 의류 세트) &gt;</p> <p>8. 부속서 4-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한/페루	<p>&lt;제3.9조 세트&gt; HS의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바와 같은 세트는 그 세트의 모든 구성요소가 원산지 상품인 때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때에는,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세트의 총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세트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 자료 : 해당 FTA협정

WTO통일원산지규정에 따르면 다수국산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의 원산지는 세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 최고가 물품의 생산국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합의하였으나 세트화 공정은 불인정한다.

관세법은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sup>14)</sup>(일명 ‘HS통칙’) 제3호 및 관련규정에서 해당하는 물품의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통칙3(b)의 주요 특성에 따른 분류원칙(소매용 세트물품)은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2종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 특정용도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 또는 구성, 재포장 없이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데 적합하게 포장한다.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①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예: 동일한 6개의 포크 세트는 이 통칙이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음), ②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

14) GRI통칙(일명 ‘HS통칙’):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③ 재포장 없이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물품이다.

### 3. 세트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방안

세트물품 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세트물품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HS관세율표에서 세트로 분류되는 상품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FTA협정과 같이 대외무역법 세트물품도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상품의 세트를 하나의 원산지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즉, 15%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경우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도 개별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해야 한다.

## V. 결 론

원산지는 소비자의 알권리, 생산자 보호, 국가 재정수입 및 관세특혜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원산지표시위반, OEM물품의 원산지판정,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벌칙규정의 형평<sup>15)</sup>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부품(또는 원재료)과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핵심부품(원재료)의 원산지표시는 일물다원산지제도로 전환하여 특성

---

15)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2010.8, pp. 379~402

상 핵심 부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에 추가하여 핵심부품이나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품목은 핵심품목 및 원재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공품으로 하고, 핵심품목 및 원재료 표시 대상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제1항 제7호를 추가하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5항을 참조하여 제87조(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제4항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는 그 대상을 HS관세율표상 세트로 분류되는 상품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FTA협정과 같이 대외무역법 세트물품도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상품의 세트를 하나의 원산지 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원산지제도의 개선은 WTO통일원산지제도의 협상 동향 및 FTA협정 원산지 규정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산지 관련 국내법들의 상충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관련 기본법이자 총괄법이지만, 모든 사항을 법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운용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관세청,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검사 핸드북, 관세청, 2008. 1  
\_\_\_\_\_, 원산지업무 매뉴얼, 관세청, 2007. 8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벌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2010.8  
박광서·오원석,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연구」, 무역학 회지 제35권 제1호, 2010  
박광서·이병문·오원석,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2009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유권해석 사례집, 지식경제부, 2012. 11.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원산지 길라잡이, 지식경 제부·한국무역협회, 2011  
채형복,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2011.9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FTA원산지실무, 한국무역협회, 2011  
황은애·이승신,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커피 제품을 중심 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2호, 2012. 8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mke.go.kr](http://www.mke.go.kr)(지식경제부)

[www.kita.net](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fta.kita.net/>)

<http://export.gov/index.asp>

[www.ustr.gov](http://www.ustr.gov)

[www.gpo.gov/](http://www.gpo.gov/)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

[www.law.cornell.edu](http://www.law.cornell.edu)

<http://www.cbp.gov/> (미국 세관)

[www.usict.gov](http://www.usict.gov) (미국 무역위원회)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Origin Marks Issues in the Korea Foreign Trade Act

Park, Kwang So

Country of origi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protection of producer, national finance and tariff preference etc. The principal issues related to country of origin are breaches of origin mark, determination of origin of OEM products, domestic products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exports products, and fairness of penalties. This study focus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and set products which have not been treated so far.

First,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need to introduce multiple countries of origin for the same products. Some specific products,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key components or materials, has to mark multiple country of origin in terms of portion and significance.

Next, Origin mark issues on set products need to expand the objects from 15 listed items of Korea Foreign Trade Act to all items of HS tariff schedules of Korea Customs Act. A set products which below 15% of components can mark single country of origin like FTA agreement such as Korea-EU FTA, Korea-EFTA, Korea-US FTA and Korea-Peru FTA.

Key Words : Country of Origin, Rules of Origin, Key Components,  
Set product, Origin mark issues on key components,  
Origin mark issues on Set product etc